건축법해설

국립건설연구소 건축자재과장 박 우하

第 7 章 雜 則

法第46條 (災害地區에서의 建築制限)

① 市長, 郡守는 災害가 있는 市街地에 있어서 都市計劃事業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區域을 指定하여 災害가 發生한날로부터 2月以內의 期間 그 區域內에서의 建築物의 建築을 制限하거나 禁止할 수 있다.

② 市長, 郡守는 非常災害가 있는 區域內에 있어서는 災害로 因하여 破壞된 建築物의 修繕이나 應急假設建築物의 建築에 關하여 이法의 規定에 不拘하고 臨時的인 措置를 할 수 있다.

第1項에서는 市長, 郡守는 災害가 있는 市街地에 있어서 都市計劃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區域을 指定하여 2月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建築物의 建築을 制限하는 禁止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第2項에서는 市長, 郡守는 非常災害가 있은 區域內에 있어서는 破壞된 建築物의 修繕이나 應急假設 建築物에 對하여 이法의 規定에 依한 建築許可等에 不拘하고 臨時的인 措置를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法第47條 (假設建築物)

市長, 郡守는 都市計劃으로써 決定된道路, 廣場 또는 公園의 豫定地에 있어서의 假設建築物의建築을 大統領令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許可할 수 있다.

市長, 郡守는 都市計劃으로 決定된 道路, 廣場, 또는 公園의 豫定地로서, 造成되기 前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基準에 따라 假設建築物의 建築許可를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令第128條 (假設建築物)

① 法第47條의 規定에 依한 假設建築物의 許可는 다음各號에 該當하는 建築物로서 容易하게 撤去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許可할 수 없다.

1. 層數가 2以下로서 地下層이 없는것.
2. 主要構造部가 木造, 콩크리트부록造 기타 이와 類似한 構造인것.

② 前項의 境遇에 市長, 郡守는 建築物의 存續期間과 기타의 必要한 附款을 붙여야 한다.

③ 工事用倉庫 및 現場事務所 또는 써커스用建築物 기타 臨時的인 假設建築物을 築造하고자 할 때에는 着工 5日前에 市長, 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項에서는 法第47條의 規定에 依하여 假設建築物을 許可하고자 할 때에는 層數가 2以下로서 地層이 없어야 하며 主要構造部는 木造, 콩크리트부록造 기타 이와 類似한 構造로서 撤去하기 容易한 것으로 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第2項에서는 市長, 郡守는 假設建築物의 建築許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듯이 存續期間과 기타의 必要한 附款을 붙일것을 規定하고 있다.
第3項에서는 工事用倉庫 및 現場事務所 또는 써커스用建築物 기타 臨時的인 假設建築物을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 때에는 着工 5日前에 市長, 郡守에게 申告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法第48條 (用途変更)

建築物의 用途를 変更하는 行爲는 이法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建築物의 建築으로 본다.

이 條文에서는 建築物의 用途変更은 建築物의 建築(新築, 增築, 改築, 再築, 移轉)으로 보아 建築法第5條의 規定에 依한 建築許可를 받아야 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法第49條 (擁壁 및 工作物等에의 準用)

垈地를 造成하기 爲한 擁壁, 굴뚝, 廣告塔, 高架水槽 기타 이와類似한 工作物의 築造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法의 規定의 一部를 準用한다.

擁壁, 굴뚝, 廣告塔, 高架水槽 기타 이와 類似한 工作物의 築造에 關하여 大統領令의 定하는바 따라 이法의 一部를 準用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令第129條 (擁壁 및 工作物等에의 準用)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工作物의 築造에 關하여는 法第49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를 建築物의 建築으로 보고 法中 第5條乃至第7條, 第10條, 第21條, 第23條, 第25條, 第26條, 第42條, 第43條, 第50條, 第5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1. 높이 6미터를 넘은 굴뚝(支持物이 있을 境遇에는 이를 包含하되 煖爐의 굴뚝은 除外한다)
2. 높이 15미터를 넘은 鐵筋콩크리트造의 기둥, 鐵柱, 木柱, 기타 이와 類似한것(旗대 및 架空電線用의 것을 除外한다)
3. 높이 4미터를 넘은 廣告塔, 廣告板, 裝飾塔, 記念塔, 기타 이와 類似한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高架水槽, 싸이로, 望樓 기타 이와 類似한것.
5. 높이 2미터를 넘은 擁壁 및 담.

이 條文에서 揭記된 工作物은 建築物 또는 建築設備는 아니나 安全을 保持하는 見地에서 그 構築을 建築과 同一하게 取扱하기 爲하여 이法中 必要한 規定을 準用하는 것이다.

即法中 第5條의 規定에 依한 建築許可, 第6條의 規定에 依한 建築物의 設計 및 工事監理, 第7條의 規定에 依한 建築物에 關한 檢査 및 使用承認, 第10條의 規定에 依한 構造耐力, 第21條의 規定에 依한 避雷設備, 第23條의 規定에 依한 特殊建築物等에 있어서의 避難 및 消火에 關한 技術的基準, 第25條의 規定에 依한 建築材料의 品質, 第26條의 規定에 依한 災害危險地區, 第42條의 規定에 依한 違反建築物等에 對한 措置, 第43條의 規定에 依한 報告 및 檢査, 第50條의 規定에 依한 標識의 設置, 第51條의 規定에 依한 工事現場의 危害의 防止의 規定을 準用하도록 되어 있다.

令第130條 (굴뚝 및 굴뚝의 支持物)

① 前條第1號에 揭記하는 굴뚝에 對하여는 前條에 依하는 外에 第28條, 第29條, 第32條, 第33條, 第42條第項, 第43條, 第44條, 第3章中 第5節, 第6節(第66乃至 第68條를 除外한다) 및 第7節(第42條第1項, 第44條, 第61條, 第62條, 第64條 및 第65條의 準用에 關한 部分에 限한다.)의 規定을 準用하는 外에 그의 構造에 따라 各各 다음 各號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야 한다.

1. 陶管, 콩크리트管 기타 이와 類似한 管으로 만들어진 굴뚝은 管과 管사이를 세멘트몰탈로 接合하고 굴뚝은 支持할 수 있는 支持틀과 또는 支持틀과 支線을 設置하여 이를 緊結할것. 다만 높이 10미터를 넘은 것은 그 支持틀을 鐵製로 하고 支線을 要하지 아니하는 構造로 할 것.
2. 組積造 또는 無筋콩크리트造의 굴뚝은 崩落을 防止할 수 있는 鐵材의 支持틀을 設置할 것.
3. 鐵筋콩크리트造의 굴뚝은 鐵筋에 對한 콩크리트의 被覆두께를 5센치미터 以上으로 할것.
4. 높이 16미터가 넘은 굴뚝은 鐵筋콩크리트造 또는 鐵造로 하고 支線을 要하지 아니하는 構造로 할 것.

② 굴뚝의 支線의 端部는 鐵筋콩크리트의 말뚝 기타 썩을 憂慮가 없는 建築物이나 工作物 또는 防腐의 措置를 講究한 나무말뚝에 緊結하여야 한다.

이 條文에서는 굴뚝을 設置할 때의 構造上 安全措置等 에 對하여 規定하고 있다.

令第131條 (鐵筋콩크리트의 기둥等)

第129條第2號에 揭記하는 것에 對하여는 同條에 依하는 外에는 第28條, 第29條, 第32條, 第33條, 第39條, 第3章中第5節 및 第6節 (第66條乃至第68條를 除外한다)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條文에서는 第129條第2號에 揭記된 높이 15미터를 넘은 鐵筋콩크리트 기둥의 構造安全에 對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令第132條 (廣告塔 또는 高架水槽等)

① 第129條第3號 또는 第4號에 揭記하는 것에 對하여는 同條에 依하는外에 이를 組積造 및 無筋콩크리트造 以外의 構造로 하여야 한다.

② 前項에 揭記하는 것에 對하여는 第28條, 第29條, 第32條乃至第34條, 第36條, 第38條第1項, 第39條, 第3章中第5第 및 第6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條文에서는 第129條第3號에 揭記된 4미터를 넘은 廣告塔, 廣告板, 裝飾塔, 記念塔 기타 이와 類似한것과 第4號에 揭記된 높이 8미터를 넘은 高架水槽, 싸이로, 望

樓 기타 이와類似한 것은 組積造 및 無筋콩크리트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鐵製나 鐵筋콩크리트造 等으로 하여야 할 것을 規定하고 있으며 構造의 安全性을 强調하고 있는 것이다.

令第133條 (擁壁)

第129條第5號에 揭記하는 擁壁에 對하여는 同條에 依하는外에 第28條, 第29條第3項, 第42條第1項, 第52條, 第61條第1項, 第62條, 第63條第1項, 第62條(第64條 및 第65條의 準用에 關한 部分에 限한다)의 規定을 準用하여 그 構造는 다음 各號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야 한다.

1. 鐵筋콩크리트造 石造 기타 이와類似한 썩지 아니하는 材料를 使用한 構造로 할 것.
2. 石造의 擁壁은 우김돌에 콩크리트를 使用하고 돌과 돌을 充分히 結合할 것.
3. 擁壁의 裏面의 물이 排水가 잘되도록 排水구멍을 設置할 것.

이 條文에서는 第129條第5號에 揭記한 높이 2미터를 넘은 擁壁을 築造할때는 鐵筋콩크리트造, 石造等으로 하되 擁壁의 裏面에는 排水가 잘되도록 排水구멍을 設置하여, 擁壁築造의 構造上 安全을 規定하고 있다.

法第50條 (標識의 設置等)

建設工事의 施工者는 當該建築工事의 現場에 建設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따라 標識을 揭示하고 關係設計圖書를 備置하여야 한다.

建築工事의 現場에는 建築許可事項에 對한 標識을 揭示하고 關係設計圖書를 工事現場에 備置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標識의 書式은 既히 設明한 書式 8號를 參照하면 된다.

法第51條 (工事現場의 危害의 防止)

建築工事의 施工者는 當該工事의 施工으로 因한 落盤 또는 建築物이나 工事用建築物의 倒壞로 因한 危害를 防止하기 爲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建築工事의 施工者는 工事를 함에 있어 落盤等으로 因한 人命被害等을 防止하기 爲하여 保護網等 必要한 安全措置를 할것을 規定하고 있다.

法第52條 (建築物의 垈地가 區域, 地域 또는 地區의 內外에 걸칠 때의 措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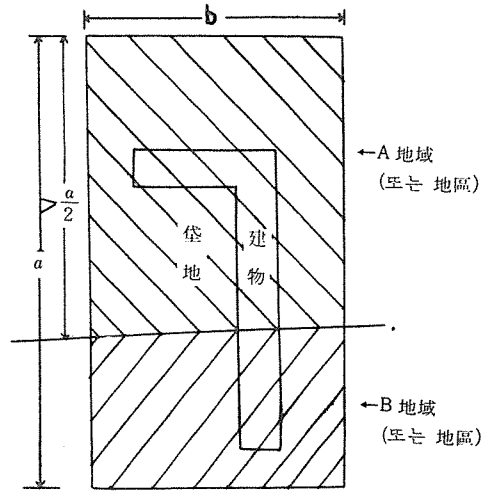

垈地의 全部가 A 地域(또는 地區) 內에 屬하는 것으로 하여 A 地域(또는 地區) 內의 建築物에 該當하는 規定을 適用한다.

(法52. 그림)

垈地가 이法에 規定하는 垈地, 構造 또는 建築設備에 關한 禁止 또는 制限을 받은 區域, 地域 또는 地區(防火地區를 除外한다)의 內外에 亘하는 境遇에는 그 建築物 또는 垈地의 全部에 對하여 그 垈地의 過半이 屬하는 區域, 地域 또는 地區內의 建築物에 關한 規定을 適用한다.

이 條文에서 地區中 防火地區를 除外한 것은 別途로 (法37) 規定이 있기 때문이며, 垈地가 3種以上의 區域, 地域 또는 地區에 亘할 때에는 規定의 趣旨로 보아 垈地의 過半이 屬하는 區域, 地域 또는 地區內의 建築物에 關한 規定을 適用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法第53條 (面積, 높이 및 層數의 算定)

建築物의 垈地面積, 延面積, 바닥面積 및 높이, 建築物의 처마, 天井 및 바닥높이나建築物의 層數의 算定方法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建築物의 垈地面積, 延面積, 바닥面積, 天井, 바닥, 처마높이 層數의 算定方法 等은 大統領令에 規定하도록 委任하고 있다.

令第6條 (面積 높이等의 算定方法)

① 法 또는 이 令에서의 面積, 높이 및 層數의 算定方法은 다음 各號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1. 垈地面積 : 垈地의 水平投影面積을 말한다.

2. 建築面積 : 建築物(地下層에 있어서의 地盤面上 1미터以下의 部分을 除外한다)의 外壁 또는 이와 類似한 기둥의 中心線(처마, 채양, 부연, 칸티레바 기타 이와 類似한 것으로 當該 中心線부터 水平距離 1미터以上 突出部分이 있을 때에는 그 端部로 부터 水平距離 1미터 後退한線)으로 둘러진 部分의 水平投影面積을 말한다.

3. 바닥面積 : 建築物의 各層 또는 그 一部로서 壁 기타의 區劃의 中心線으로 둘러진 部分의 水平投影面積을 말한다.

4. 延面積 : 建築物의 各層의 바닥面積의 合計를 말한다.

5. 建築物의 높이 : 地盤面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가) (나) 또는 (다)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各各 (가) (나) 또는 (다)에 定하는 바에 依한다.

(가) 法第40條 또는 法第41條의 規定에 依한 높이의 算定에 있어서는 前面道路의 路面의 中心으로 부터의 높이에 依한다.

(나) 階段室, 昇降機塔, 裝飾塔, 望樓, 屋窓 기타 이와 類似한 建築物의 屋上部分의 水平投影面積의 合計가 當該 建築物의 建築面積의 8분의 1 以內의 境遇에는 그 部分의 높이는 12미터까지는 當該 建築物의 높이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 지붕마루裝飾. 防火壁의 屋上突出部 기타 이와 類似한 屋上突出物은 當該 建築物의 높이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6. 처마높이 : 地盤面부터 建築物의 지붕틀 또는 이와 類似한 橫架材를 支持하는 壁 깔도리 또는 기둥의 上端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7. 層數 : 昇降機塔, 裝飾塔, 望樓 기타 이와 類似한 建築物의 屋上部分 또는 地下層의 倉庫, 機械室 기타 이와 類似한 建築物의 部分으로서 水平投影面積의 合計가 當該 建築物의 建築面積의 8분의 1 以下의 것은 當該建築物의 層數에 算入하지 아니하며, 建築物의 一部가 空井으로 되어 있을 境遇 建築物의 垈地가 斜面 또는 段地일 境遇 기타 建築物의 部分에 依하여 層數를 달리할 境遇에는 이들 層數中 最大의 것에 依한다.

② 前項第2號, 第5號 또는 第6號에 있어서의 地盤面은 建築物의 周圍가 地面과 接하는 平均水平面을 말하고 그 接하는 位置의 高低差가 3미터를 넘을 境遇에는 그 高低差가 3미터 以內마다의 平均水平面을 말한다.

③ 第1項第1號 또는 第7號의 境遇의 水平投影面積의 算定方法은 同項第2號의 建築面積의 算定方法에 依한다.

(가) 垈地面積이란 垈地의 水平投影面積을 말한다. 다만, 法第3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線으로 指定하는 線과 道路와의 사이의 部分垈地는 算入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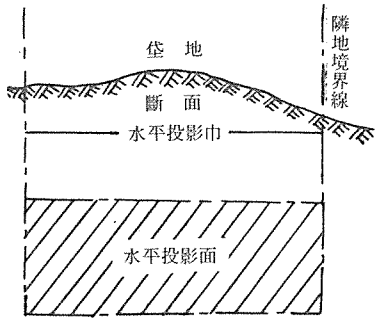

(그림 令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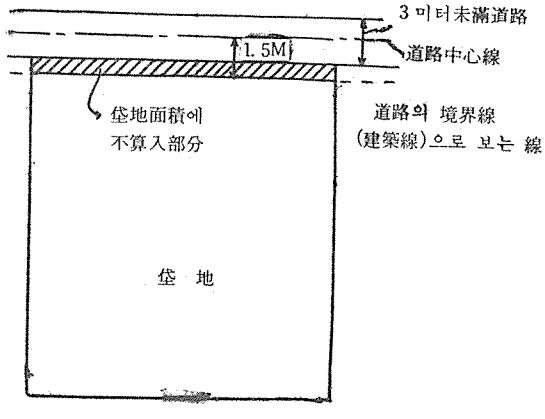

(法 30. 1+2) 일때

(나) 建築面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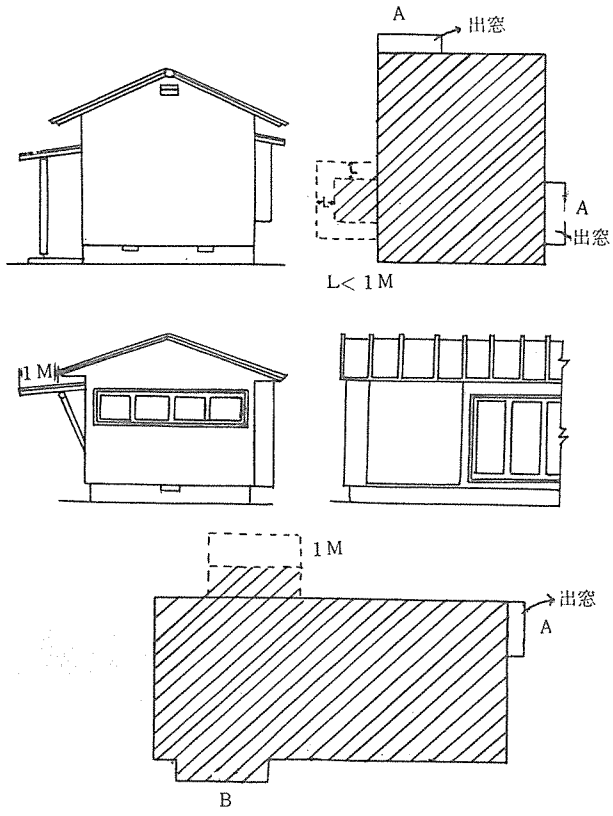

A : 出窓等일때　　B : 外壁의 凸出部인때

그림 (令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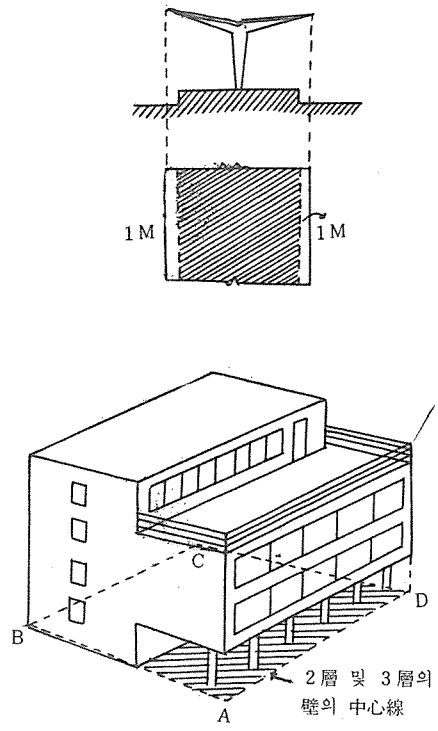

그림　建築面積 : ABCD

그림 (令 6.2)

(다) 바닥面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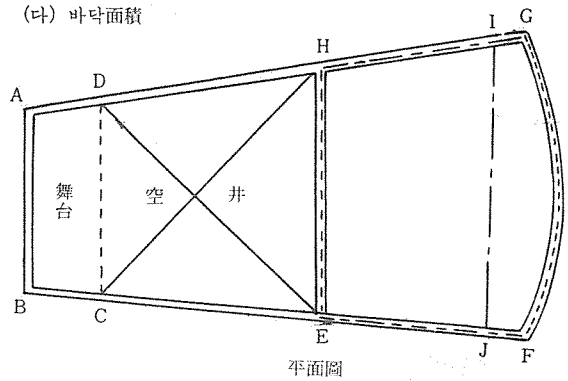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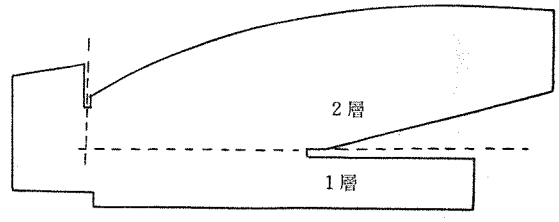

斷面圖

ABCD舞台바닥面積　　DCIJ 1層客席바닥面積
EFGH 2層客席바닥面積

그림 (令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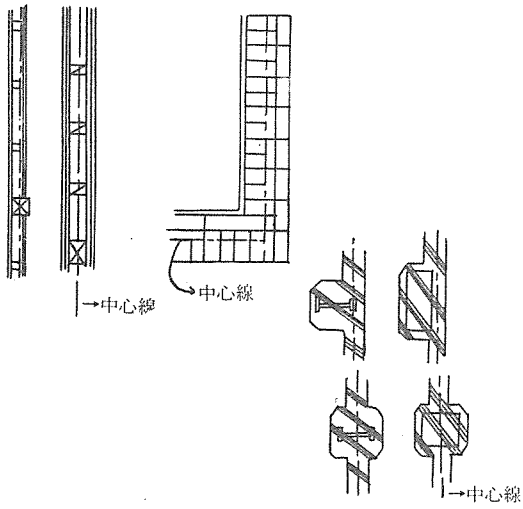

그림　外壁의 中心線(令 6.2)

(라) 延面積이라 함은 建築物의 各層의 바닥面積의 合計를 말하고

(마) 建築物의 높이는 그림으로 表示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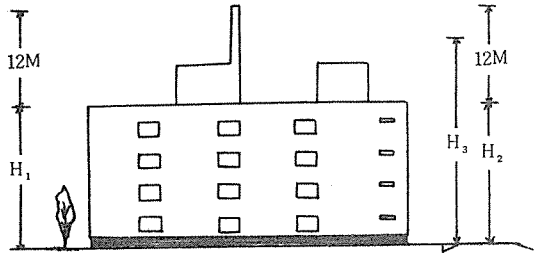

H_1 : 一般인 境遇의 建築物의 높이
H_2H_3 : 令 6 條 (가)(나)(다)의 適用을 받을 때의 建築物의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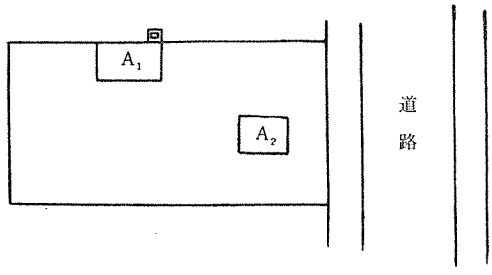

A_1A_2 : 水槽室, 階段室, 昇降機塔
$A_1+A_2 \leqq \frac{1}{8}$ (當該建築物의 建築面積)

그림 (令 6.5)

(바) 처마높이는 그림으로 表示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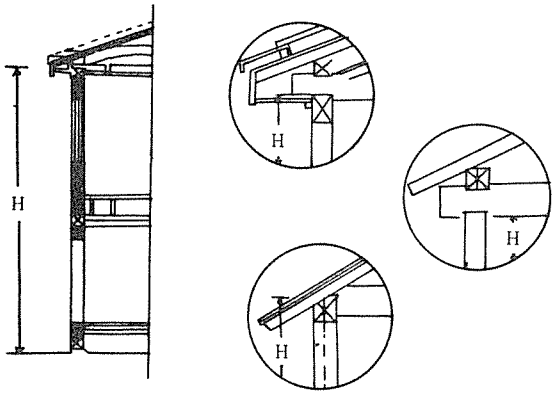

그림 (令 6.6)

(사) 層數의 算定方法은 다음과 그림과 같이 說明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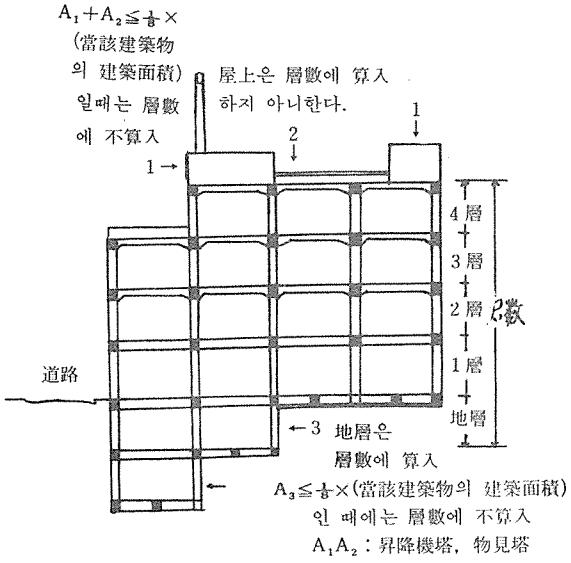

A_1A_2 : 昇降機塔, 物見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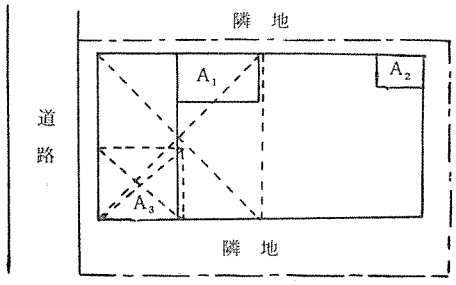

그림中
A_1A_2 : 昇降機塔, 裝飾塔, 物見塔
$A_1+A_2 \leqq \frac{1}{8}\times$ (當該建築物의 建築面積)인 때는 層數에 不算入
屋上은 層數에 不算入
地層은 層數에 算入
$A_3 \leqq \frac{1}{8}\times$ (當該建築物의 建築面積)인 때는 層數에 不算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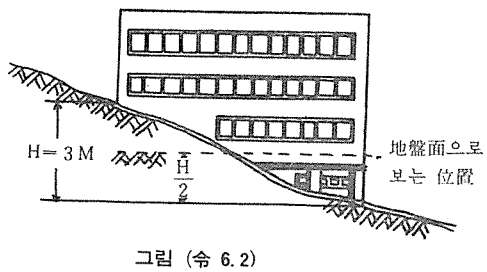

그림 (令 6.2)

法第53條의 2 (다른 法令의 排除)

商業地域안에 防火地區에서 建築物을 建築할 때에 그 隣接地와의 境界에 防火壁을 築造할 境遇에는 民法第242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이 條文에서는 商業地域 안에 防火地區에서 建築物을 建築할 때에 隣接地와의 境界에 防火壁을 築造할 때에는 民法第242條의 規定에 依한 相隣關係의 原則으로서 壁面의 位置를 境界線으로 부터 0.5미터의 간격을 두도록 되여있으나 이를 排除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는 곧 0.5미터의 간격을 둔다 하드라도 1미터로서는 通路로서도 使用할 수 없고 오히려 都市美觀上 害롭기 때문에 民法 第242條를 排除하고 있는 것이다.

參考

民法第242條 (境界線附近의 建築)

① 建築物을 築造함에 있어서는 特別한 貫習이 없으면 半미터 以上의 距離를 두어야 한다.

② 隣接地所有者는 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에 對하여 建物의 變更이나 撤去를 要求할 수 있다. 그러나 建築에 着手한後 1年을 經過하거나 建物이 完成된 後에는 倍償만을 請求할 수 있다.

法第53條의 3 (同前)

第5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行하는 建築物의 建築. 大修繕 또는 主要変更에 關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行政代執行法 第3條第1項 및 第2項에 規定한 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代執行할 수 있다.

이 條文에서는 第5條(建築許可)의 規定을 違反한 建築物, 即 無許可建築物에 對하여는 行政代執行法의 規定에 依한 戒告節次等을 省略하고 發見即時 撤去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參考 : 行政代執行法

第3條 (代執行의 節次)

① 前條의 規定에 依한 處分(以下執行이라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相當한 履行 期限을 定하여 그 期限까지 履行되지 아니할 때에는 代執行을 한다는 뜻을 미리 文書로써 戒告하여야 한다.

② 義務者가 前項의 戒告를 받고 指定期限까지 그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할 때에는 當該行政廳은 代執行令狀으로써 代執行을할 時期, 代執行을 시키기 爲하여 파견하는 執行責任者의 姓名과 代執行에 要하는 費用의 概算에 依한 見積額을 義務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 非常時 또는 危險이 切迫한 境遇에 있어서當該行爲의 急速한 實施를 要하여 前2項에 規定한 手續을 取할 餘裕가 없을 때에는 그 手續을 거치지 아니하고 代執行을 할 수 있다.

法第53條의 4 (同前)

① 第5條의 規定에 依한 建築許可에는 消防法第7條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建築物의 建築許可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學校, 劇場, 觀覽場, 百貨店, 舞蹈場, 市場, 火葬場, 屠殺場, 貯藏庫 및 카바레
2. 病院, 旅舘, 共同住宅, 寄宿舍, 工場, 營業用倉庫 및 車庫로서 延面積 660平方미터 以上의 建築物.

② 消防署長은 市長, 郡守로부터 前項但書 및 消防法第7條의 規定에 依한 意見聽取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要求를 받은 날로부터 第5條第4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建築物에 關한 것은 3日以內에, 기타의 建築物에 關한것은 7日以內에 意見을 回報하여야 한다.

③ 市長, 郡守가 第1項但書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建築物에 關하여 建築許可를 한때에는 管轄消防署長에게 許可事項을 通報하여야 한다.

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建築物을 市長, 郡守가 建築許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消防法第7條의 規定에 依하여 消防署長의 意見을 聽取할것을 規定하고 있다.
第2項에서는 消防署長은 市長, 郡守로부터 意見聽取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都市計劃區域內 및 市 또는 邑의 區域안의 地域에 있어서는 3日以內 기타 地域에 있어서는 7日以內에 意見을 通報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第3項에서는 第1項但書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建築物(消防署長의 意見聽取가 不必要한 建築物)을 建築許可한 때에는 市長, 郡守는 消防署長에게 許可事項을 通報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令第134條 (許可通報)

① 法第53條의 4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市長, 郡守가 管轄消防署長에 對하여 行하는 建築許可에 關한 許可事項의 通報는 그 許可를 한날로부터 3日以內에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通報書式은 建設部令으로 定한다.

이 條文에서는 市長, 郡守가 建築許可事項을 消防署長에게 通報할 때에는 建築許可를 한날로부터 3日以內에 할것을 規定하고 있다.

法第53條의 5 (公害防止)

市長, 郡守가 公害防止法에 依한 公害防止 區域으로 指定된 地域안에서 公害防止法第5條 第4項의 規定에 依한 工場이나 事業場에 關한 建築許可를 할 때에는 公害防止措置를 條件으로 붙여야 한다.

建築法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市長, 郡守가 建築許可를 할 때에는 公害防止區域으로 指定된 地域에 있어서는 반듯이 公害防止措置를 條件으로 붙일것을 規定하고 있다.

法第53條의 6 (標準設計圖의 活用)

① 建設部長官은 庶民住宅의 建築을 爲한 標準設計圖書를 作成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標準設計圖書에 對 하여는 建築士法第5條 및 第22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 標準設計圖書의 作成 및 管理 기타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建設部長官은 庶民住宅建築을 爲한 標準設計圖書를 作成할 수 있고, 標準設計圖書에 對하여는 建築士法第5條 및 第22條들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作成 및 管理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委任하고 있다.

令第135條 (標準設計圖書의 作成)

① 法第53條의 6第3項의 規定에 依한 標準設計圖書는 建築延面積이 50平方미터 以內의 住宅에 限한다.

② 建設部長官이 標準設計圖書를 作成하였을 때에는 이를 公告하고 市長, 郡守가 管理하도록 한다.

③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作成된 標準設計 圖書의 改正, 廢止, 管理 및 取扱要領과 價格에 關하여는 建設部令으로 定한다.

建設部長官이 庶民用住宅인 標準設計圖書를 作成할 때에는 建築延面積이 50平方미터까지 할 수 있고 이를 作成하였을 때에는 이를 公告하고 市長, 郡守가 管理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또한 作成된 標準設計圖書의 改正, 廢止, 管理 및 取扱要領과 價格에 關하여는 建設部令으로 定하도록 되어 있다.

第8章 罰則

法第54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1,0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條의 規定에 違反한者.
2. 第39條 第40條 또는 第41條의 規定에 違反한者.
3. 第48條의 規定에 違反한者.

法第55條 (同前)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6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乃至 第11條. 第15條乃至第17條, 第18條第1項 및 第2項, 第20條乃至 第22條의 3, 第25條. 第27條第1項, 第28條, 第31條, 第35條, 第36條의 規定에 違反한 當該建築物, 工作物 또는 建築設備의 設計者 또는 工事監理者, 다만, 設計圖書에 따르지 아니한 工事를 施工하였을 때에는 當該建築物 또는 建築設備의 工事施工者.
2. 第6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工事監理 者를 위촉하지 않은 建築主.
3. 第12條 및 第24條의 規定에 依한 大統領令에 違反하였을 때의 當該建築物 또는 建築設備의 設計者, 다만 設計圖書없이 工事를 施工하였거나 設計圖書에 따르지 아니한 工事를施工하였을 때의 當該建築物 또는 建築設備의 工事施工者.

法第56條 (同前)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者는 1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法第56條의 2 (同前)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者는 2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하지아니하거나 虛僞로 申告한者.
2. 第7條 第4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建築物을 使用하게한者.
3.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制限 또는 禁止에 違反하였을 때의 當該建築物의 建築主.

法第5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自然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法人 또는 自然人의 業務에 關하여 前3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自然人에 對하여도 各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다만,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爲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怠慢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法第58條 (罰則規定의 委任)

第26條第2項 또는 第33條의 規定에 依하여 定하는 條例에는 罰則으로서 2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하는 規定을 둘 수 있다.

第54條乃至第58條의 規定은 罰則 規定으로서 建築法을 違反하였을 때의 懲役刑과 罰金에 處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附　則

① (施行日) 이法은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法令) 1934年 6月制令第18號 朝鮮市街地計劃令은 이를 廢止한다.

③ (經過規定) 이法 施行當時從前의 法令에 依하여 發하는 命令에 抵觸하지 아니하는限 이法의 規定에 依한 것으로 본다.

④ (同前)이 法施行當時의 建築物로서 第32條의 規定에 適合하지 아니한것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範圍內에서 增築, 改築 또는 그 用途의 變更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同前)이 法施行當時의 建築物을 大統領令의 定하는 範圍內에서 增築 또는 改築할때에는 第35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　則 (1963. 6. 8法律第1356號)

이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30日후에 施行한다.

附　則 (1967. 3. 30 法律第1942號)

이法은 公布한後 30日을 經過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70. 1. 1 法律第2188號)

이法은 公布한後 2月을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令 附 則

① (施行日)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用途地域內에서의 既存建物에 對한 制限의 緩和) 法第32條의 規定에 適合하지 아니한 既存建築物의 增築, 改築 또는 그 用途를 変更할수 있는 範圍는 當該建築物의 同條의 規定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때(以下 이 項에서 "基準時"라 한다)를 基準으로 하며 10年間에 限하여 다음 各號에 定하는 바에 依한다.

1. 增築 또는 改築이 基準時에 있어서의 垈地面積에 對하여 各各 法第39條에 規定하는 比率을 超過하지 말것.
2. 基準時以後에 있어서의 增築으로 增加되는 延面積(增築하는 建築物이 2以上의 棟을 이를 境遇 또는 数回에 걸쳐서 增築할 境遇에는 增築으로 增加하는 延面積의 合計)의 2분의 1을 超過하지 아니할 것.
3. 基準時以後에 있어서의 增築 또는 用途의 変更에 依하여 增加하는 法第32條의 規定에 適合하지 아니한 用途에 쓰이는 建築物의 部分의 바닥面積의 合計(数回에 걸쳐 增築하거나 用途를 変更하였을 境遇에는 이 增築 또는 用途의 変更으로 增加한 그 바닥面積의 合計)는 基準時에 있어서의 그 바닥面積의 合計의 2분의 1을 超過하지 아니할 것.
4. 法第32條의 規定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事由가 原動機의 馬力数 또는 機械의 台数로 因한 것일 境遇에는 基準時以後에 있어서의 原動機의 出力 또는 機械의 台数의 合計의 2분의 1을 超過하지 아니할 것.

③ (防火地區內에서의 既存建物에 對한 制限의 緩和) 法第33條第1項의 規定에 適合하지 아니한 既存建築物(木造의 建築物에 있어서는 外壁 또는 그 屋內面 및 처마밑이 防火構造인 것에 限한다)을 다음 各號에 定하는 範圍內에서 增築하거나 改築하는 境遇에는 同條의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

1. 既存建築物이 法第35條第1項의 規定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때(以下 "基準時"라 한다) 以後에 있어서 增築하거나 改築하는 同條의 規定에 適合하지 아니한 建築物의 部分의 바닥面積의 合計(数回에 걸쳐서 增築하거나 改築하였을 境遇에는 增築 또는 改築에 關係되는 部分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50 平方미터 以下로서 基準時에 있어서의 그 바닥 面積의

合計를 超過하지 아니할 것.

2. 增築 또는 改築後에 있어서 當該 建築物의 層数가 2以下이고 또한 延面積이500平方미터를 超過하지 아니할 것.

3. 增築 또는 改築에 關係되는 部分의 外壁 및 처마밑은 防火構造로 할 것.

建設部令第105號 (1971. 3. 11)

標準設計圖書運營規程

第 1 條 (目的)

이 令은 建築法第53條의 6 및 同法施行令第135條의 規定에 依하여 建設部長官이 作成하는 標準設計圖書를 效果的으로 管理活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定義)

이 令에서 標準設計圖書(以下 "圖書"라 한다)라 함은 建設部長官이 作成한 建築延面積 50平方미터 以內의 住宅用設計圖(平面圖, 立面圖, 基礎伏圖 및 지붕틀伏圖, 斷面圖, 詳細圖 및 窓戶圖를 말한다) 使用資材內訳書 및 示方書等을 말한다.

第 3 條 (圖書의 作成公告)

建築法施行令 第135條第 2 項의 規定에 依하여 建設部長官은 圖書를 作成한 때에는 이를 公告한다. 公告된 圖書를 改正 또는 廢止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第 4 條 (圖書의 表示)

建設部長官은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公告한 圖書에는 그 圖書마다 다음의 表示를 한다.

住宅型	番號	建築面積	M² (평)	縮尺	圖面名稱	作成年月日	標準設計圖書	建設部 (印)

第 5 條 (圖書의 普及)

①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 (以下 "道知事"라 한다)는 第 3 條의 規定에 依한 圖書의 作成公告가 있을 때에는 住宅型別로 圖書의 所要量을 定하여 이를 送付하여 줄것을 建設部長官에게 要請하여야 한다. 追加로 더 必要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建設部長官이 前項의 要請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送付한다. 다만, 建設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住宅型別 및 数量을 調整하여 送付할 수 있다.

③ 前項의 規定에 따라 圖書의 送付를 받은 道知事는 지체없이 이를 區庁長(서울特別市, 釜山市 및 區가 設置되여 있는 市의 区庁長 으로서 建築許可權이 委任된 경우에 限한다. 以下 같다) 市長 또는 郡守에게 配付하여야 한다.

④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圖書의 配付를 받은 区庁長, 市長 또는 郡守는 그 配付받은 圖書의 住宅型別 內容을 公告하고, 그 圖書를 一般에게 供覽시켜야 한다.

⑤ 区庁長, 市長 또는 郡守는 前項의 規定에 依하며 公告된 圖書를 實需要者에게 第 7 項의 規定에 依한 告示價格으로 販賣하여야 한다.

第 6 條 (圖書의 作成및 送付의 費用)

圖書의 作成및 送付에 必要한 費用은 國庫가 이를 負担한다. 다만, 建設部長官은 前條第 1 項後段의 規定에 依하여 追加로 要請받은 圖書의 作成 및 送付에 必要한 費用은 予算의 範圍안에서 執行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必要로 하는 区庁長, 市長 또는 郡守가 属하는 地方自治 団体로

하여금 이를 負担하게 할 수 있다.

第 7 條(圖書의 價格告示)
建設部長官은 圖書의 販賣價格을 每年 告示한다.

第 8 條(圖書의 販賣代金의 歸属)
圖書의 販賣代金의 歸属은 다음 各號에 依한다.

1. 代金의 50퍼센트는 國庫收入.
2. 代金의 50퍼센토는 地方自治団体의 收入.
   다만, 第 6 條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自治団体가 費用을 負担한 圖書의 境遇에는 그 全額.

第 9 條(圖書의 管理台帳等)
① 区庁長, 市長 또는 郡守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圖書管理台帳을 作成備置하여 圖書의 販賣狀況을 記録하여야 한다.

1. 配付받은 圖書(住宅型別)의 部数 및 配付받은 年月日
2. 住宅型別 販賣年月日
3. 買収者의 住所, 姓名
4. 販賣部数
5. 販賣價格

② 区庁長, 市長 또는 郡守는 매달의 圖書販賣實績을 別紙書式에 따라 다음달 15日까지 道知事에게 報告하고, 道知事는 每分期別 圖書販賣實績을 다음 分期 첫달 20일까지 建設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10條(圖書의 在庫調査)
道知事는 每年 2月中에 圖書의 在庫調査를 實施하고, 그 結果를 3月15日까지 建設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11條(圖書의 管理上守則)
① 区庁長, 市長 또는 郡守는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配付된 圖書의 대여
2. 販賣된 圖書의 환부 또는 交換
3. 圖書의 內容을 任意로 変更 또는 增補하는 行爲
4. 圖書의 複寫

② 식별할 수 없을 程度로 原形이 훼손된 圖書는 이를 販賣하거나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附　　則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公　　告〉

本協會 會員에겐 金뱃지를 職員은 同型의 銀뱃지를, 補助員에겐 小型의 銀色 뱃지를 부착키로 되였읍니다. 아직도 뱃지를 구입 못하신 분은 本協會 總務部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뱃지 代金

(ㄱ) 會員用 金뱃지	(1.1cm×1.1cm)	1,500원
(ㄴ) 職員用 銀뱃지	(1.1cm×1.1cm)	200원
(ㄷ) 補助員用 〃	(0.9cm×0.9cm)	200원